

국회의원 김상민·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

국 회 의원회관 (신관2층 제2소회의실)

3
2
4
4
4
4
2
4
5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안

경희법학연구소장 박 흰 일

목 차

1. 서론 : 문제제기

2. 개인영상정보 침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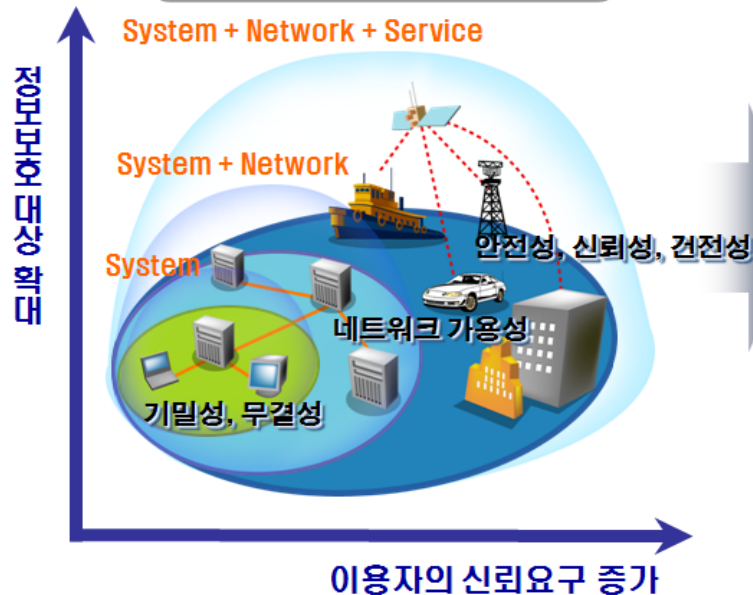
3. 학원내 안전/폭력사고 대책

4. 개인영상정보관련 법개정사항

5.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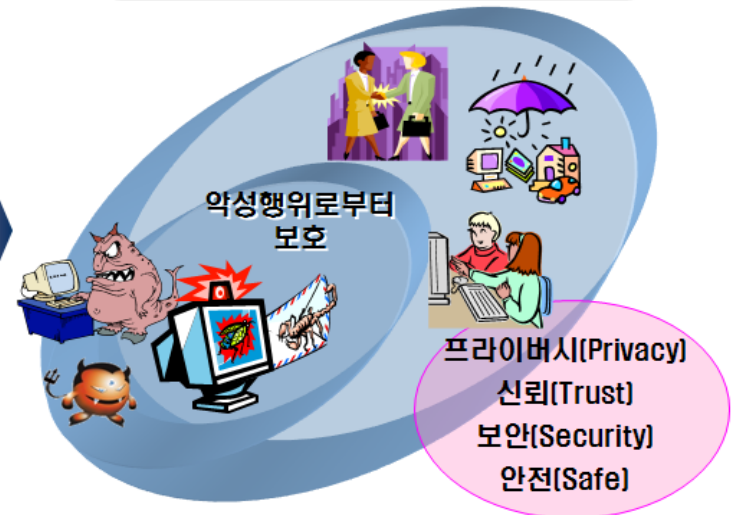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의 영역 및 개념의 확장

정보보호의 영역



- ▶ 기밀성 (Confidentiality): 권한 없는 사용자로부터의 접근을 방지
- ▶ 무결성 (Integrity): 권한 없는 자료변경을 방지
- ▶ 가용성 (Availability): 정보/서비스의 이용성 향상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확장



유비쿼터스 정보보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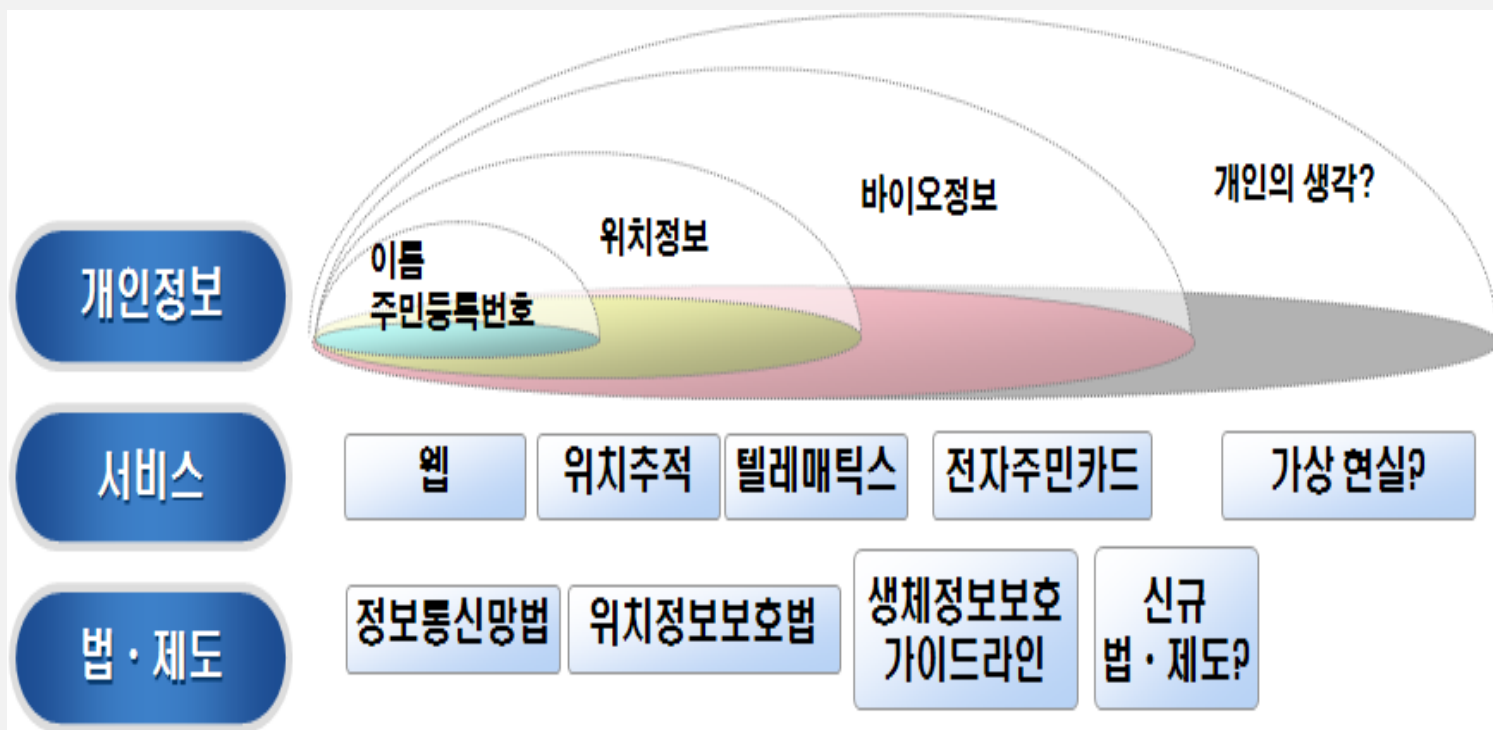
안전성
신뢰성



이동성

개인정보보호의 환경 변화

신규서비스 증가 ⇒ 개인정보 침해요인 증가



• 자료 : KISA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대응 정책> 2007. 4.

개인정보보호의 환경 변화

- ◆ CCTV, 위치정보 등, 바이오정보에 의한 신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급증
 - 새로운 기술은 생활의 편리성을 증대시키는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인격적·재산적 피해를 주는 사례 속출
 - 편리성과 범죄수사 등 실효성은 유지하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는 법·제도 필요

개인영상정보의 특징

◆ 개인영상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 정보

-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시각적 정보
- 관심도 ↑, 대중전파력 ↑
- 개인의 초상, 신체, 제스처 등 인격의 침해 가능성



개인영상정보보호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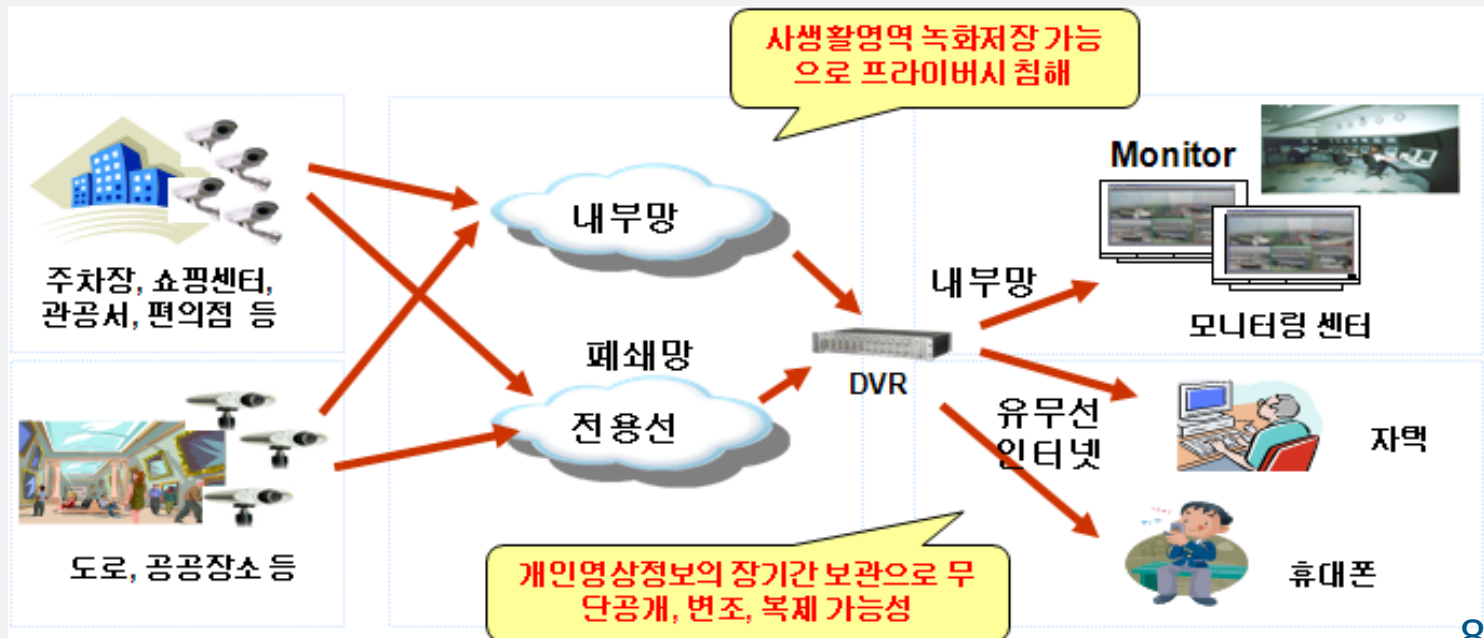
- ◆ Video Surveillance 사회에서 모든 시민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안감 고조
 - 개인영상정보 유출 오·남용 시 개인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혼란, 정보사회에 대한 신뢰 붕괴 우려
 - 사회적으로 만연한 신상털기는 개인의 사회활동을 저지하는 등 경제적 피해까지 야기
- ◆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의 사활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로 대두
 - 단 1회의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도 기업 이미지·신뢰성 실추
 - 최근 SKC, 메이플스토리, KT 가입자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전 국민이 잠재적 피해자, 법원에서도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중시하는 경향
 - 이미 미국에서는 Choice Point사에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1,5백만불 배상 판결(2006.1)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문제제기

- CCTV의 증설 및 화소 개선 시급
- CCTV 모니터링의 자체관리 또는 위탁관리
-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실태
- CCTV에 관한 기술개발 및 지능화 추진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CCTV 개인영상 정보보호와 침해 사례

- ◆ 범죄예방 주요시설 관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확대 설치
 - 단순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고 개인식별, 실시간 추적 등 침해 가능성 상존



목 차

1. 서론 : 문제제기
- 2. 개인영상정보 침해 사례**
3. 학원내 안전/폭력사고 대책
4. 개인영상정보관련 법개정사항
5. 결론

개인영상정보 침해 사례(1)

- ◆ 금융기관에서 ATM 위에 CCTV를 설치하여 개인신용 정보 유출 우려



- 일부 은행 점포에서 ATM 부스 천장에 CCTV를 설치
- 저장된 영상은 은행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민간 영상관리업체에 위탁

개인영상정보 침해 사례(2)

◆ 경찰청 교통방범용 CCTV의 운영관리상 문제

- CCTV 위탁관리 업체가 영세하고, IP 통합이 되어 있지 않아 접근권한 관리 등의 보안정책 수립
- 타임서버가 없어 수집시간의 불일치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제약



- 관제센터의 차량방범용 CCTV는 모든 통과차량의 영상정보를 일단 저장한 뒤 사후에 수사 목적으로 사용
-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

개인영상정보 침해 사례(3)

◆ 주거지역 CCTV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운영관리 문제



-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CCTV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관리
-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CCTV 영상정보를 근거로 근무지 이탈 직원을 해고한 것은 목적 외의 이용이므로 손해배상 지급을 결정

목 차

1. 서론 : 문제제기
2. 개인영상정보 침해 사례
- 3. 학원내 안전/폭력사고 대책**
4. 개인영상정보관련 법개정사항
5. 결론

학원내 안전/폭력사고 방지를 위한 CCTV 운영 개선(1)

◆ 각급 학교의 CCTV 설치현황과 문제점

- 기존 설치된 CCTV의 저해상도 문제(현재 94%가 50만 화소 이하)로 인하여 사건 발생시 정확한 영상정보조사가 어려운 실정
-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요원(배움터 지킴이 등)도 태부족

학원내 안전/폭력사고 방지를 위한 CCTV 운영 개선(2)

◆ 각급 학교의 CCTV 설치 현황 - 화소수

학교	CCTV 대수	화소수		적외선가능
		50만 이하	50만 이상	
초등학교 596개교	6,448	94.4%	5.6%	40.0%
중학교 379개교	5,181	91.4%	8.6%	40.0%
고등학교 317개교	6,216	94.5%	5.5%	37.0%
특수학교 29개교	334	93.0%	7.0%	32.3%
총 1321개교	18,179	93.6%	6.4%	38.9%

* 출처 : 오마이뉴스 2013. 3. 15 (2012. 11. 16 현재)

학원내 안전/폭력사고 방지를 위한 CCTV 운영 개선(3)

◆ 각급 학교의 CCTV 설치 현황 - 설치장소

학교	CCTV 대수	설치장소(%)					
		정문	후문	중앙현관	운동장	실내	기타
초등학교 596개교	6,448	9	9	10	12	18	41
중학교 379개교	5,181	6	5	6	7	48	28
고등학교 317개교	6,216	4	3	4	4	61	24
특수학교 29개교	334	11	7	6	9	37	31
총 1,321개교	18,179	8	6	6	8	41	31

* 출처 : 오마이뉴스 2013. 3. 15 (2012. 11. 16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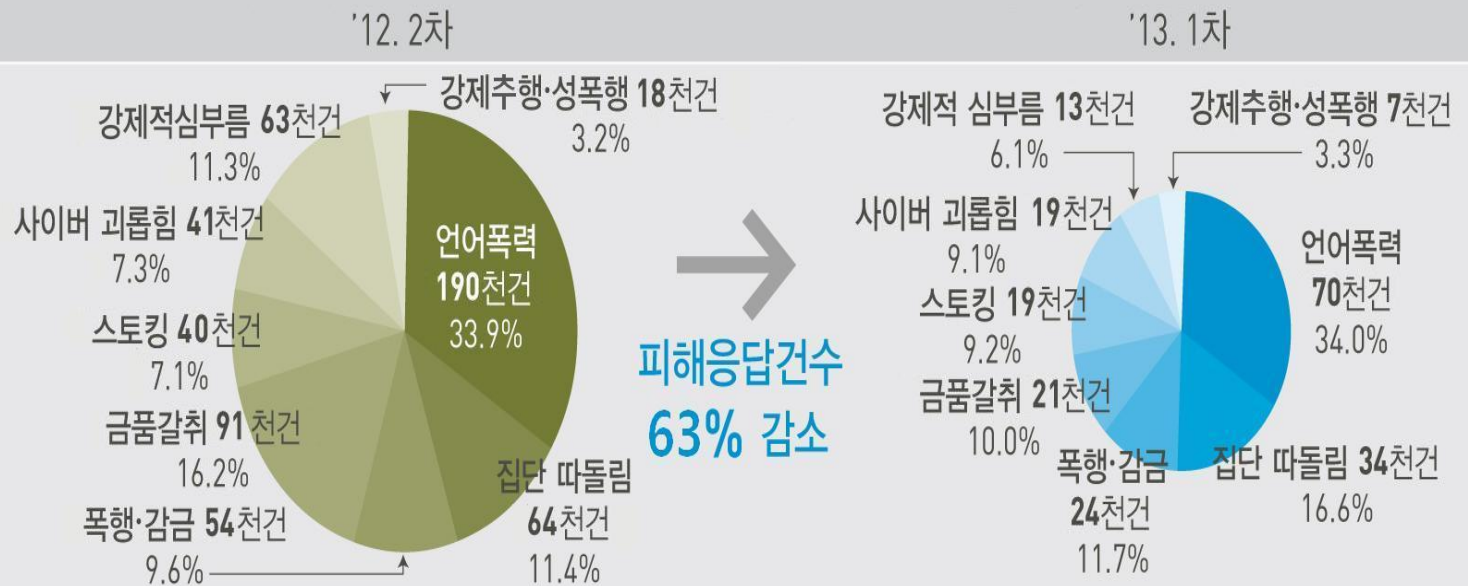
시·도교육청 학교 CCTV 관련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지역	2011년 (집행액)	2012년 (집행액)	2013년 (예산액)
서울	1,260	967	600
부산	150	120	1,455
경기	243	200	-
강원	1,675	240	1,914
충북	5	109	606
충남	524	534	1,423
전북	1,569	440	-
전남	2,150	4,878	1,100
경북	1,129	1,519	150
경남	2,960	571	1,040
제주	272	220	233
총계	11,937	9,798	8,521

학원내 안전사고 및 폭력사고 통계(1)

◆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응답 건수



- 출처 : 교육부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2013. 7.

학원내 안전사고 및 폭력사고 통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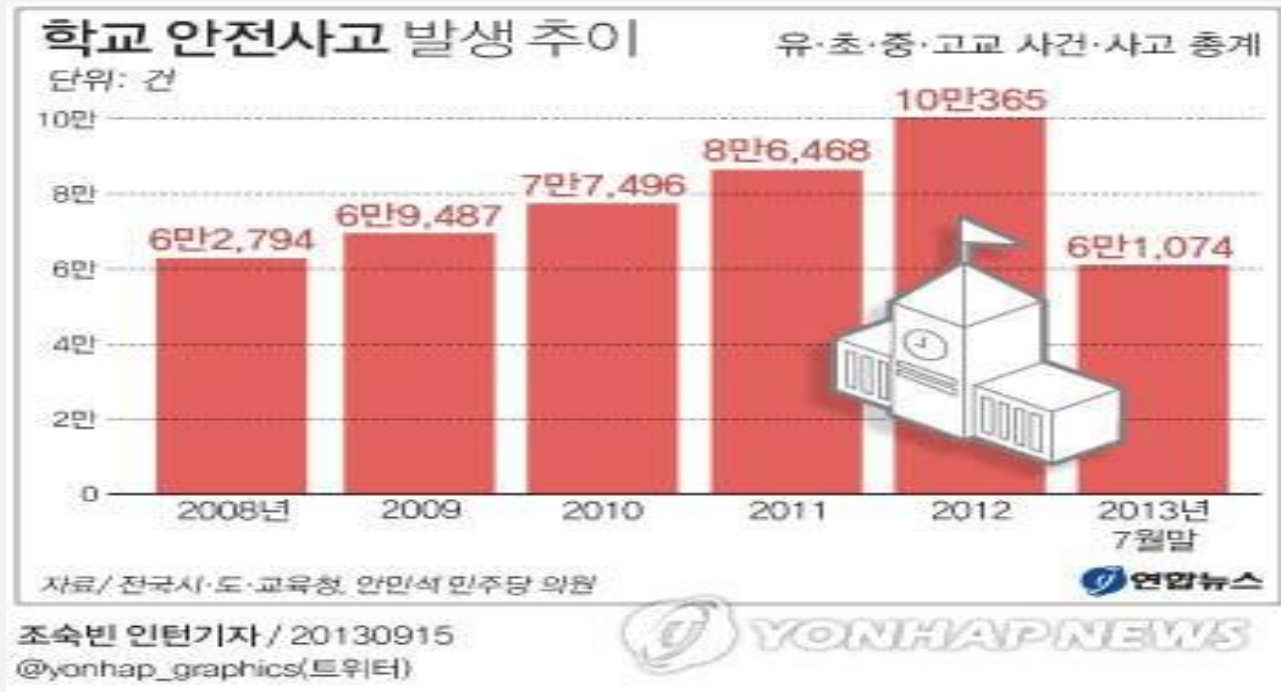
◆ 발생장소



- 출처 : 교육부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2013. 7.

학원내 안전사고 및 폭력사고 통계(3)

◆ 학교 안전사고 발생 추이



- 출처 : 연합뉴스 2013. 9. 15

학원내 사고대책과 문제점(1)

- 각급 학교에서 CCTV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내부규정 미비
- 각급 학교에서의 영상정보 모니터링 인력의 부족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
-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표준화 모델이 필요

학원내 사고대책과 문제점(2)

- ◆ CCTV 모니터링의 확대에 따른 학생·교직원의 Privacy 침해 가능성 상존
- ◆ 영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문제
 - 1차: 자체관리+지자체 공공관제센터를 이중으로 활용
 - 2차: 예산확보 후 지역별로 전문민간업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학원내 사고대책과 개선방안(1)

◆ 개선방안

- 지역단위로 각급 학교의 영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통합관제센터 전문 모니터링 요원·공익요원이 취약지구·취약시간대 중심으로 모니터링 실시
-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개발 필요
- 관련 학생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마련도 필수

학원내 사고대책과 개선방안(2)

- ◆ 학생 및 관계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수준 제고
 -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의식 수준(Awareness) 제고 등 자율적인 개선 유도
 - 예산범위 내에서 사고발생빈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

학원내 사고대책과 개선방안(3)

◆ 기술개발의 필요성

- 기존 학원내 사고의 패턴을 분석하여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맞춤형 관제기술의 R&D 필요성
- 정형화된 사고발생시 자동감지하는 지능형 CCTV 설치
- 뉴욕시가 MS社와 공동개발한 범죄감시통합시스템(DAS) 참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영상기록관리시스템(IRMS)

주요기능	업무프로세스
영상관리	접근이 통제된 폐쇄망 내 영상저장스토리지에 영상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저장
DB관리	인가된 단말기 이외의 접근은 자동 통제되고 있어 위·변조가 불가
제공관리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은 영상기록관리시스템(IRMS)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통제
로그관리	영상정보 조회, 반출 등의 기록 유지
운영자관리	인가된 운영자만이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도록 권한 관리

- ◆ 모니터링 퀄리티 제고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인영상정보보호관리시스템(VPMS) 도입 필요

목 차

1. 서론 : 문제제기
2. 개인영상정보 침해 사례
3. 학원내 안전/폭력사고 대책
- 4. 개인영상정보관련 법개정사항**
5. 결론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법 체계 변화(1)

◆ 개인정보보호법

- 2011.3.29. 제정, 2011.9.30. 시행
- 계도기간을 거쳐 2012. 4. 1 본격 시행

◆ 법 시행 이전

-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에 한해 규율
 - 공공기관(36만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 민간부문 : 규율 법령 없이 CCTV 설치 운용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법 체계 변화(2)

◆ 법 시행 이후

- 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영되는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하여 규율
 - 규제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
 - 공공기관(36만대) + 민간부문(332만대 추정)
- 적용대상 : 기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카메라도 포함
 - 택시·버스 등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의 관리실태 문제점 속출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1)

(진선미 의원실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6조상의 문제점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⑧과 제26조 ①에 따라
 - ▷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 영상정보의 관리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 위탁받는 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외에
 - ▷ 추가로 안내판 등에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 시켜야 함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2)

(진선미 의원실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는 기기의 성격을 기준으로 규정이 마련돼 있어 새로운 방식의 영상정보 활용을 위한 규율 적용이 어려움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좀 더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블랙박스가 영상정보처리기기라면 어디를 촬영하는지 안내판을 다 붙여야 함)
- 각 지방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 열람청구의 경우 다양한 상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규정의 구체화 필요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3)

(진선미 의원실 제공)

- ◆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설치·운영 제한에 관한 규제만 있을 뿐 효용성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설치·운영 제한에 관한 규제만 있을 뿐 효용성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위치정보 보호법까지 고려한 별도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필요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4)

(진선미 의원실 제공)

- ◆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련 표지판 식별, 실시간 추적에 대해서는 영장을 도입할지 또는 기록을 의무화할지 논의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 필요
 - 개인영상정보보호관련 개별법을 만드는 것보다 제25조에서 추가하거나 시행령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정
 - 실질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독기관이 필요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5)

(진선미 의원실 제공)

◆ 개인영상정보처리는 명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공공정보 활용에 있어 영상정보의 비식별화 지침이 필요하고, CCTV의 적절한 설치 유도를 위해 영향평가, 절차사항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
- 모니터링,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과 삭제 요구에 대한 절차 마련 필요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6)

(진선미 의원실 제공)

- ◆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오·남용 등 역기능을 미연에 방지 하는 기능을 개발할 필요
 - 법적인 제도 및 규율이 만들어져야 역기능도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

(김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

◆ 제안이유

- 최근 개인영상정보의 관리를 위탁받은 용역업체가 개인 영상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오·남용 사고가 빈발
-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내부통제시스템의 정의, 그 구축·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목적 외 사용 등 내부인에 의한 개인정보 오·남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

(김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개인정보의 정의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안 2조 1호)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안 29조 1항)
- 개인정보에 접속한 기록과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용을 의무화함(안 29조 2항 및 31조 2항 4호 신설)
-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인정보에 접속한 기록 및 처리한 기록을 변경·훼손·말소시키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29조 3항 및 72조 1의2호 신설)

목 차

1. 서론 : 문제제기
2. 개인영상정보 침해 사례
3. 학원내 안전/폭력사고 대책
4. 개인영상정보관련 법개정사항
5. 결론

개인정보보호법규의 효과적 시행(1)

- ◆ 범죄예방·시설관리를 위한 CCTV 촬영·녹화도 중요하지만 법 취지에 맞는 개인정보의 사후관리도 중요
 - 관리실태 파악 후 ▷ 자체관리 → 담당직원 훈련 ▷ 위탁관리 개인(영상)정보 내부 통제시스템 가동 → 본사(학교)의 책임
 - 개인정보처리 위탁자의 책임 범위
 - 개인정보 보안에 취약한 업종, 사업체를 위한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 제작 보급
 - 보안규정 및 내부통제시스템에 적합한 보안기술의 개발 필요성

개인정보보호법규의 효과적 시행(2)

- ◆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Cross-Border 유출사고에 대비한 국제 협력체제 강화
 -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폭력물·미성년자 음란물을 인터넷을 통해 해외 전파하는 사례 급증
 - SNS 등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개인영상정보 침해 사례 대처
 - 주요국이 협력하여 다국적 포탈에 대한 단속·규제 강화
 - GPEN, APEC 등 기존 기구 활용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

All the Best!

박 흰 일 onepark@khu.ac.kr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onepark.khu.ac.kr>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장
<http://ils.khu.ac.kr>